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6. 12(월) 10:00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
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35호
- 나. 제 출 자 : 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커피·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주로 다류·아이스크림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(안 제2조제3호)
- 나.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함(별표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제2호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 - 2) 입법예고: 2023. 4. 26. ~ 5. 16.(20일 이상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배출 사업자 및 배출 기준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나. 주요 내용

1)다량배출사업자에서 주로 다류·아이스크림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(안 제2조제3호)

-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(茶類)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2)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함(별표2)

- 기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과 배출요령만 규정하고 있었으나, 개정안 별표 2는 음식물류와 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함에 있어 불편과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를 개정하고,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

[시행 2022. 11. 29.] [대통령령 제33011호, 2022. 11. 29., 일부개정]

제8조의4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)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5. 12. 22., 2016. 6. 30., 2022. 6. 14.>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)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(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)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.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[주로 다류(茶類)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. 다만,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,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.

가. 사업장 규모(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)

나.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

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

4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·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·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·운영하는 자

5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

6.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

[본조신설 2014. 1. 14.]